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

화성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**『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』**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◈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◈ 신청자 모집공고 마감일은 2025.04.04(금)이며,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.
- ◈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.
- 직전 3년(2022년~2024년)내에 화성시 경영환경개선사업, 2022년 ~2025년 경기도와 시·군 등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(지원제외 및 선정취소)
- ◆ 신청자는 시공(제작) 외주업체와 자부담금(부가세 포함)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, 허위 시공(구매), 수수료요구 및 지불, 과대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.(지원 취소, 지원금 환수)

1. 신청개요

○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

신청접수	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	환경개선 시행 (개별 컨설턴트 방문)	지원금 지급 신청
'25.03.31(월)	'25.04.18.(금)예정	선정 통보 후	공사완료부터
~ '25.04.04(금)	(개별 문자통지)	~ '25.11.29(금)	~'25.12.06(금)

○ 지원대상

- 화성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
- ※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. 10. 04까지 신청가능 (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)
 - 소상공인이란(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)
 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 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[**별표2**]에 해당 *****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[**별표1**]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
- 접수기간 : 2025년 3월 31일(월) ~ 4월 4일(금) (접수가능시간 : 09:00~18:00)
 -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4월 4일(금) 18:00 도착분에 한함.
 -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- 접수방법 : 방문 및 우편제출(접수처 하단 확인)
 -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- 선정발표 : 2025년 4월 18일(금)(예정)
 -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.
 -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.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

○ 지원내용 : 공급가액의 100%지원, 최대 300만원 지원 ※지원한도 초과분, 부가세 본인 부담 ※ 2024년도 동일사업 지원내용과 상이하오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단위사업	세부 지원내용	지원한도	비고
점포 환경개선	│ • 소화·방범 설비		지원부문 간
시스템 개선	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(2025.1.28.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) POS 기기, 프로그램 구매 스마트 오더 CCTV 기기, 프로그램 구매 * 기기 구매 없이 프로그램만 별도 구매 불가 	300만원 이내	중복가능

*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

- 장애인,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, 안면인식, 수어 영상 안내,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키오스크로서, 「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2025년 1월 28일부터 50㎡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됨.
- 다만, 50㎡미만인 사업장에는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(소프트웨어)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시 예외. (건축물대장을 통해 바닥면적이 50㎡ 미만임이 확인될 경우, 배리어프리 기능이 없는 일반 키오스크 지원 가능)

○ 지원규모 : 약 95개소 내외

-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.
 - * 선정 이후 포기자 발생 시, 후순위자 선정 후 지원 예정

• 지원 유의사항

-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, 단위사업 중복 신청가능
 - 예)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점포환경개선, 시스템개선 중복 신청 가능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.
- 1업체 당 지원분야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함.(공급가액 기준)
 - *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.
- 공급가액의 100%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.
 - 예) 인테리어 비용이 300만원(공급가 300만원, 부가세 30만원)일 경우
 - →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(300만원)의 100%(300만원) 이내

• 지워 불가사항

-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

※ 지원불가: PC, TV, 냉장고, 에어컨, 가스레인지, 로고라이트, 소파, 미용의자/샴푸대, 가구류 등

(단, 상품진열을 위한 쇼케이스냉장고, 맞춤제작 부착형 진열대 지원 가능)

※ 지원가능 : CCTV 및 POS기기, 무인결제주문시스템 구매 등

-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

imes 지원신청 o 평가 및 선정 o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

-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

※ 완료보고서 제출은 【제5호 서식】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.

- 불법성 간판, 어닝 등 지원불가 및 지원 취소 예정

: 옥외광고물의 불법성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지원 부탁드리며, 사업 선정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임이 확인되는 경우,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귀속됨을 고지합니다.

• 시공업체 유의사항

- 시공업체는 **화성시 관내 소재한 시공업체**로 제한 (**화성시**에 소재한 시공업체에서 견적서 수령)
- 점포환경개선에 한해 시공업체당 사업 신청 소상공인 최대 5개사로 제한.
- 상대적으로 시공업체가 수가 적은 시스템개선의 경우 적용 예외 (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.)

○ 제출서류 (※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추후 반화 불가)

항목	구 분	제출서류
		1. 지원신청서 1부 (제1호서식)
	소상공인 작성서류	2. 추진계획서 1부 (제2호서식)
		3.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(제3호서식)
필수 제출		4.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
	소상공인 발급서류	5.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(발급처 : 시·군·구청, 주민센터, 정부24) - 공동대표일 시, 모든 대표자들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- 체납·미납 지원불가/국세 납세 증명서·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
		6.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2024년 필수) 1부 (발급처 : 세무서, 홈택스) ① 과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: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

항목	구 분	제출서류
m A	제작(외주) 업체로부터 수령	7. 제작견적서 1부 (제4호서식) - 견적서내 공급가액,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, 제작업체 직인 필수
필수 제출		8. 제작(외주)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- 제작(외주)업체는 화성시 관내 소재와 지원분야에 연관된 업태와 종목인 업체 필수 - 제작(외주)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필수
	제작(외주) 업체로부터 수령	9. 옥외광고업등록증 1부 - 간판,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
해당시 제출		10. 정보통신공사등록증 1부 - CCTV 시공 시 시공업체의 「정보통신공사등록증」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① CCTV 시공 개수와 상관없이, 시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00㎡를 초과하는 경우 ② 시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여도, 6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※ 상기 두 가지 조건이 아닌 경우는 「정보통신공사등록증」 제출 불필요 (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,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참고 요망)
	소상공인 발급서류	11. 건축물 대장 1부 (발급차 시·군·구청, 주민센터, 정부24) - 사업장 바닥면적이 50㎡ 미만인 사업장에서 베리어프리 기능 미탑재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제출 필수 (※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발급 필수)
		12. 우대조건 확인서류

• 우대사항(가점부여)

- 공고일 이전 화성시 거주자(2점, 주민등록초본 기준)
- 임차사업장(2점, **임대차계약서 기준**)
- 행복화성 지역화폐 가맹업체(1.5점, 사업 공고일 기준)
- 화성시 배달특급 가맹점(1.5점, 사업 공고일 기준)
-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선정업체(1.5점, 사업 공고일 기준)
- ※(지역화폐, 배달특급, 착한가격업소) 화성시 자체 확인, 별도 제출 서류 없음
- 국가보훈대상자(제대군인 제외), 기타(기초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) 인정사항 (1.5점, 중복 불인정)

3.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

○ 선정기준

- 정량평가, 정성평가, 가산점의 합산 5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

- 정성평가 :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면평가

- 동점자처리 : 정량평가, 정성평가 고득점 순으로, 전년도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자 결정

구분	배점	세부 심사평가 항목
정량평가	40점	■ 사업기간 업력(사업자등록증 기준) ■ 매출현황(신청자의 평균 매출액 기준)
정성평가	50점	■ 사업 연관성(사업장 소개, 지원의 필요성 및 명확성) ■ 사업 효과성(기대효과) ■ 사업 타당성(견적비용의 적정성)
가산점수	10점	■ 공고일 이전 화성시 거주자(2점, 주민등록초본 기준) ■ 임차사업장(2점, 임대차계약서 기준) ■ 행복화성지역화폐 가맹업체(1.5점, 사업 공고일 기준) ■ 화성시 배달특급 가맹점(1.5점, 사업 공고일 기준) ■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선정업체(1.5점, 사업 공고일 기준) ■ 국가보훈대상자(제대군인 제외), 기타(기초수급자, 북한탈주민, 장애인) 인정사항(1.5점, 중복 불인정)

○ 지원절차

신청	신청서 제출 (소상공인)	·제출서류 접수처로 접수(우편, 방문) - 견적서는 표준견적서[제4호 서식]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, 제작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.
및	-	
평가	평가 및 지원결정	·1차 서류 평가 ·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(문자)
	-	
과세진행	과제수행	·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(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)
	-	
	비용 지급 (소상공인→제작업체)	·소요금액(공급가액 + 부가세) 입금 ·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(현금 지급, 카드 인정 불가)
	-	
지원금 지급	지원금신청서 제출 (소상공인→KPC)	·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(지출증빙포함)제출 ·점포환경개선 등 과제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
	-	
	지원금 지급 (KPC→소상공인)	·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

- ※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(변경서식 제12호, 포기서식 제13호)
- ※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달 이상 소요

4. 사업 운영 지침

○ 지원 제외
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(종업원 수 기준)
-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2]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
- 사치향락업종(골프장, 무도장, 유흥주점) 또는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(투기, 저해업종 등)
-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가맹점, [별표1]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
-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(수입금액)이 "0"원 이하인 사업자
- 사업자 무등록자, 무점포 사업자
- 최근 3년(22~24년)내 화성시에서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
- 2022~2025년 경기도·시군 등에서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
-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, 휴·폐업 중인 사업자,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,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
○ 지원 선정 취소

-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
-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(제작)한 경우
-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
- 타업체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
-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, 제작기간,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-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(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함.)

- 허위·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
- 신청기업에 휴·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(사업기간 내 사업 휴·폐업·양도 시 지원불가)
- 기타 한국생산성본부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○ 지원 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

- 결정된 지원사항 내 세부 지원내용의 변경(시공업체 변경 등)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【제12호 서식】를 한국생산성본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,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.
-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. (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,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100%로 변경)
- 선정업체의 사정으로 지원 포기의 경우【제13호 서식】제출하여야 하고, 차 순위 예비 순번 자에게 지원 기회 제공됨

○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화수
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시)

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- 화성시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○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

- 제작비용은 대표자(또는 법인)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함.
- 소상공인 사업장이 공동대표일 경우 : 책임대표자 1인으로 권한 위임.
- 책임대표로 모든 서류에 성명·서명과, 책임대표 명의로 부가세 및 초과금 입금, 지원금 수령 등 진행
- 기출증빙은 은행(또는 ATM)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,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.
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,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.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.
- 지원금 지출의 방식(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)
- 1)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(부가세 포함)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,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,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
- 2)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(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)에 대해서 선 기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,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

○ 외주업체(시공·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) 선택 시 유의사항

-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함.
- 외주업체 선정 시 화성시 관내 소재한 외주업체로 제한됨. (디지털 지원의 경우 예외)
-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(부모, 형제 등)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.
- 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(제작)하는 경우 지원 불가.(선정취소)
-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.

○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

-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.
 - ※ 제출서류: 관련서식([제5호 서식]지원금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)
 - ※ 기출증빙 : 은행(또는 ATM)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
-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소요비용을 온라 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,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.
 - (현금지급 및 카드결제는 인정하지 않음. 지원금 지급 불가함)
- 한국생산성본부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.

5. 문의 및 접수처

접 수 처		담 당 지 역	연 락 처	
우편번호	편번호 주 소		한국자	
-	화성시 기안남로 62 기배동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	화성 (현장 접수처)	02-3702-0775	
03170	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	서울 (우편 접수처)	02-3702-0776 02-3702-0777	

*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

- ☞ http://www.kpc.or.kr/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'지원사업/이벤트' 클릭
 - → "2025년 **화성시**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" 바로가기 클릭
- ☞ http://www.hscity.go.kr/ 화성시청 홈페이지 상단 중앙 검색창에 "2025년 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" 검색
 - → 검색결과 내 "2025년 **화성시**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" 공고 클릭

한국생산성본부 회장

[별표1]

『화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』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1	주류 도매업 * '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정된 "전통주 등"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*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221 중	주류 소매업 * '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정된 "전통주 등"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*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갑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* 단,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신청가능 -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, 알선하는 산업활동.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 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(인적용역제공자)은 지원제외

표준산업분류	업 종
	в о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 문 및 중개업(68221, 68222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,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
64992	지주회사
71531 중	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* (예시) 기획부동산 등
731	수의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 * 단,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안마원 규모(300M ²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

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』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개정 '17.10.17.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평균매출액 등
1. 식료품 제조업	C10	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120억원 이하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
19. 광업	В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العالم الماما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80억원 이하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
30. 운수 및 창고업	Н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= 0.41.611.=1
33. 정보통신업	J	5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30억원 이하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, _ , ,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10억원 이하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, 🖵 , ,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[HZ]		

^{1.}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

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